

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 세부시행계획

다음은 1996. 8. 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에 대한 세부시행계획 중 건설안전 관련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이다.

추락·낙하·붕괴 등 재래형 건설재해 근절

1. 공사단계별 안전관리 강화

단위산업 및 주요내용	세 부 추 진 내 용
1-1.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작성·심사 및 확인제도 개선 가. 사업주(해당 사업장안전관리부서)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일정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 작성 나. 심사내실화를 위해 심사전문요원 보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·확인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제도개선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일정자격자(유자격자)의 의견을 들어 작성 ※ 유자격자 범위 : 건설분야 기술사, 건설안전지도사 등 시공분야 유경력자인 시공회사 소속직원 또는 외부전문기관 소속직원 등 – 심사 후 시공자가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통보 –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 첨부서류에 공정별 위험요인분석 및 위험방지대책 추가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조치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–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–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, 심사 및 확인 등에 관한 규정(노동부고시 제95-38호) 개정 <input type="checkbox"/> 심사 몰량 증대에 따라 내실있는 심사를 위한 심사인력 보강

안전자료①

단위산업 및 주요내용	세부추진 내용
다. 확인검사 횟수증대를 통한 저속적 인지도·감독실시	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검사 실시횟수 증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행 년 2~4회 실시중인 확인검사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(년간 8천회 실시)
라. 심사 및 확인검사내용 DB화	<input type="checkbox"/> 전산 프로그램 개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심사 및 확인검사 DB화 ○ 심사 및 확인검사내용 입력
1-2. 안전작업절차서 작성 및 이행지도	<input type="checkbox"/> 안전작업절차서 작성 및 이행지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안전작업절차서 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설공종별, 공정별 작업과정중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 포함 ○ 이행지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절차서 내용에 대한 근로자 교육실시여부 및 작업공정별 안전작업절차 이행여부 확인
가. 건설공정별 안전작업절차서 작성 유도	<input type="checkbox"/> 안전작업절차서 작성기법 및 표준모델 개발·보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발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해다발 건설공사에 대해 단계별로 개발(5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단계 : 비계, 거푸집('98년) • 2단계 : 훑막이지보공('99년) • 3단계 : 철골, 철근공사 등('99년) -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개발팀 구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노동부, 관계부처, 학계, 시공사, 공사의 전문가(20명)으로 구성
나. 안전작업절차서 작성기법 및 표준 모델 개발·보급	<input type="checkbox"/> 모델 보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표준모델을 단계별로 당해공사에 대해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적용 결과 평가 및 개선
1-3. 건설일용근로자 안전관리체계화	<input type="checkbox"/> 포함항목 : 건강진단, 안전·보건교육 등
가. 「건설근로자복지카드(건설일용근 로자 퇴직공제금수첩)에 안전보건 사항 포함	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강진단실적은 해당 검진기관에서 직접 기재하고 서명·날인(검진일시, 검진결과 사후관리 소견 등) ○ 안전·보건교육은 실시업체 안전관리책임자가 직접 기재하고 서명·날인
나. 직업훈련생에 대한 안전교육강화	<input type="checkbox"/> 별도 계획 수립·추진
1-4. 안전작업기술 개발유도	<input type="checkbox"/> 안전작업기술 개발·보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락·붕괴 등의 재해발생가능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 안전작업기술 개발
가. 자동화·무인화 작업기술 연구개 발 및 보급	

단위사업 및 주요내용	세 부 추 진 내 용
나. 우수 안전작업기술개발·사용건 설업체 선발·포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무비계작업, System 거푸집, Half Slab 공법 등 ○ 추진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1·2」 안전작업절차서 사업과 병행 추진 ○ 국내에 기 도입된 안전작업기술 및 건설선진국 사례수집 □ 대상 선발 : 매년 산업안전보건대회 산재유공자 선정시 포함 □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부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, 건설관련 사업주 단체, 건설업체에 우수업체 명단을 통보 - 공사입찰시 우선권 부여토록 요청

2. 표준안전관리비 제도개선

단위사업 및 주요내용	세 부 추 진 내 용
2-1. 안전시공을 위한 적정 공사비 확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공사종류별·규모별로 안전관련 공사비 항목 파악 나. 자재 및 노임 등의 각종 건설단가 현실화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안전시공 관련 건설공사비 항목 파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계부처, 기관, 건설공사협회 관계자와 회의 개최 □ 공사비 부족여부 실태조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상 : 전국 20개소(공종별, 규모별로 조사) □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태조사 및 외국의 관련자료를 수집, 활용 ○ 관계기관 세미나 개최 등 의견수렴
2-2. 안전관리비 계상항목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안전관리비 항목 나. 안전관리항목별 사용기준 상향조정 2-3. 안전관리비 편성기준 개발·보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편성기준 개발·활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확대내역 : 현행 6개항 60여개 항목 → 12개항 120여개 항목(6개항 60여개 항목 추가) □ 추진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안전관리비 사용실태조사 및 관계자 의견 수렴 ○ 확대항목 결정 □ 조치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(노동부 고시) 개정 □ 항목별 사용기준 상향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정내용 : 현행 40% → 50% ○ 추진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안전관리비 항목확대와 병행 추진 □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사종류별(아파트, 일반건축물, 토목공사, 지하철공사, 설비공

안전자료 1

단위산업 및 주요내용	세부추진 내용
	<p>사 등) 및 규모별 적정 실행예산규모 산정방법 제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사종류별 안전관리비 항목별 소요비용 점유율 산정 ○ 공사종류별, 규모별 적정 안전기자재 소요량 파악 ○ 안전관리비 항목별 예산편성시 유의사항 등 제시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 조사를 기초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「안전관리비 편성기준」 마련 — 원·하도급 업체간 안전관리비 배분지침 등

3. 건설공사 가시설의 안전성 확보

단위산업 및 주요내용	세부추진 내용
<p>3-1. 가설공사 안전설계도서 작성 의무화</p> <p>가. 건설공사 종류별 표준안전시설 기준제정</p> <p>나.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 안전설계도서 첨부</p> <p>3-2. 가설기자재 안전수준 향상</p> <p>가. 검정대상가시설 기자재 품목 확대</p> <p>나. 가설기자재 재사용 기준제정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제정대상 : 외부비계, 지보공, 작업발판, 낙하물 방지망 등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제정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태조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— 대상업체수 : 아파트, 지하철, 별딩 등 10개 현장 ○ 표준모델 개발(공단 안전연구원 연구사업에 포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'97년 외부비계 1종, '98년 지보공, 작업발판 2종, '99년 낙하물 방지망 1종 ○ 개발된 표준모델을 시범적용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이행지도·감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년간 4회 이상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시 가설도서 및 도면에 의한 공사이행 실태 확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— 취약시기별 건설현장 점검시 확인 <p><input type="checkbox"/> 「1-1」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심사 및 확인제도 개설사업과 병행추진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품목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검정대상을 현행 19종에서 30종으로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['97년 상반기 : 6종 ['97년 하반기 : 5종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업안전보건법상 검정대상 가설기자재 19종으로서 검정합격품 목 ○ 검정대상 제외 가설기자재 중 사용빈도가 높은 품목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재사용기준</p>

단위산업 및 주요내용	세 부 축 진 내 용
<p>다. 업계자율규제유도</p> <p>라. 신규개발품목 안전성인증제 시행</p> <p>3-3. 가설공사 안전모델의 개발 및 보급</p> <p>가. 가설공사 사고 유형별로 분석, 모델 개발·보급</p> <p>3-4. 불량가설기자재 유통 균절</p> <p>가. 수거검정 확대실시 및 검정 가설 기자재 생산유도</p> <p>나. 기준미달 또는 불량가설기자재 사용현장 공사중지 등 조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용년한을 근거로 재사용 년한 설정 ○ 사용빈도를 근거로 재사용가능 성능유지 정도 설정 □ 재사용기준 제정 □ 조치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도별 재사용기준제정 대상 가설기자재 결정 ○ 재사용기준 방법에 따라 연도별 재사용기준 제정 및 고시 □ 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협회 설립유도 ○ 협회에 의한 검정실시를 통해 불량기자재 유통근절, 품질향상, 표준화 추진 □ 추진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「Ⅱ-1」 안전성검사확대 및 “안전인증마크제” 시행 사업에 포함 □ 가설공사 안전모델 개발 및 보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설공사와 관련된 붕괴 등의 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재해원인분석, 대책 등을 모델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거푸집, 비계, 흙막이, 터널굴착, 사면 등 5종 개발 ○ 건설관련 단체 및 건설시공사에 모델 보급 □ 가설기자재 수거검정 확대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기 : 반기1회 ○ 검정결과조치 : 성능불량시 즉시 합격취소조치 및 사용현장으로 하여금 수거·파기토록 조치 □ 가설기자재 제조·판매 및 사용업체 지도감독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검정가설기자재 생산유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제조업체 등에 지속적 홍보실시 – 발주처(정부, 자치단체, 투자기관 등), 감리자가 검정품구입 여부 검수로 현장에서 검정품을 구입토록 유도 ○ 지도감독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제조업체에 대해 검정품 생산여부를 확인하여 비검정품 생산 시 강력의법조치 – 건설현장 지도점검시 검정품 구입·사용여부 확인 □ 시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 및 기타 지도·점검시 수시확인, 위반사항 적발시 공사중지·작업중지 등 조치

안전자료 1

4. 종합적인 건설안전 관리체계의 구축

단위산업 및 주요내용	세부주진 내용
4-1. 종합안전관리자(Total Safety Coordinator)제도 도입 가. 발주자가 종합안전관리자 선임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제도개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선임대상공사 : 공사금액 500억 이상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년 차적으로 확대 ※ 연도별 대상공사규모는 제도효과, 업계반응, 안전관리인력 수급 등을 고려하여 관련부처(건설교통부)와 협의를 거쳐 조정 ○ 선임방법 : 발주자가 감리자 또는 안전전문가 중에서 공사지식, 실무경험이 많은 자를 종합안전관리자로 선임 ○ 역할 : 안전작업절차서 준수, 원·하도급업체간 안전관리조정 등 안전관리기술 지원·조정 등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지도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제도도입을 위한 조치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의 관련조항에 종합안전관리자제 도입에 따른 규정 신설 및 보완 - 업무범위, 업무절차, 분류·등록관리방법, 교육사항 등은 하위법규로 규정
4-2. 건설현장 관계부처 합동점검제 실시 가. 상설건설안전합동점검팀 운영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구성 및 운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동부, 건교부, 지방자치단체, 공단, 대학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100명으로 인력풀(Brain Pool)을 구성 ○ 현장점검시 공사유형 및 점검종류에 따라 인력풀 중에서 해당전문자를 선별하여 합동점검팀 구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 점검팀에 공사감독·설계감리자 및 종합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참여토록 함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조치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력운영에 관한 규정제정(공단 내부규정으로 제정) ○ 합동점검시 공사감독, 설계감리자 등 참여방안 강구
4-3. 지역별, 업체별 건설공사 협의체 구성유도 가. 건설공사 협의체 구성 및 활동지원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협의체 구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사진척도를 고려, 공사종류별, 지역별로 구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종공사 협의체 : 지하철, 고속전철, 아파트, 도로공사, 빌딩공사 위주로 구성 - 대형공사 협력업체 협의체 : 신도시, 신공항 위주로 구성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협의체 활동</p>

단위산업 및 주요내용	세 부 추 진 내 용
<p>4-4.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참여확대</p> <p>가. 전문기관 지정요건 변경</p> <p>나. 전문기관의 업무영역확대 및 조건완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협의체 회원간의 자율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정보교류 등 공동안전관리 노력 ○ 상호 안전순찰(Safety Patrol)실시 및 정보교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협의체 회원 중 안전관리우수업체의 안전관계자가 분기별 1회이상 타업체를 점검토록 하고, 상호 정보·기술 교류 <p>□ 협의체운영 활성화 및 활동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협의체 운영 활성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협의체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제작, 배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요내용 : 협의체 목적, 조직, 운영방법, 재원조달, 사업 내용 등 ○ 현장근로자 무료안전교육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설현장의 신청을 받아 교육 실시 ○ 교육자료개발·보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육용비디오('96년 4종, '97년 2종, '98년 1종, '99년 1종 등 8종) - 안전수첩 개발·배부(년간 2만부) - 재해교육책자('96년 2종, '97년 2종, '98년 2종, '99년 2종 등 8종) ○ 재해사례 및 재해정보 보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재재해사례집, 속보 제작·배포 및 각종 정보 FAX 전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공사 및 유관기관 2,600개소 전송 • FAX 구입(3대) • 속보(매년 400건) 및 사례집(매년 4종 2,000부) 제작배포 <p>□ 변경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행 「비영리법인」을 「법인」으로 변경 <p>□ 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문기관 업무영역의 지역제한을 폐지 ○ 업무지정승인은 전문기관이 소재한 관할지방 노동관서장에게 위임
<p>4-5.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수준 향상</p> <p>가. 기술지도요원의 자격요건 및 실무경력을 강화</p> <p>나. 전문기관의 시설·장비현실화</p>	<p>□ 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건설부문 : 산업안전학과 졸업자 및 안전관리자 양성과정 이수자는 점진적으로 건설안전기사, 토목·건축기사로 대체 ○ 전기·통신부문 : 산업안전학과 졸업자 및 안전관리자 양성과정 이수자는 점진적으로 전기·통신기사로 대체 <p>□ 내용</p>

안전지뢰 1

단위산업 및 주요내용	세부추진 내용
<p>다. 기술지도요원에 대한 교육강화</p> <p>4-6. 기술지도 대상사업장의 선정기준 등 의 현실화</p> <p>가. 기술지도대상사업장 선정기준 등 현실화</p> <p>4-7. 재해취약현장 지도·감독강화</p> <p>가. 건설현장 취약시기별 점검</p> <p>나. 중대재해 기동반 운영</p> <p>다. 특별지도 점검 순찰차량 운영</p> <p>라. 대규모 건설공사 재해예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비 : 불필요한 장비 배제, 사용빈도가 높은 휴대용 장비 보유 확대 및 현장에 맞게 차별화 ○ 시설 : 현행 기술지도기관의 시설기준 중 장비실 기준은 폐지하고 사무실 기준으로 일원화 □ 대상 : 전문기술지도기관의 기술지도요원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억원 이상 공사기술지도 주기조정 : 분기 1회 → 2개월에 1회 ○ 기술지도요원 담당사업장수 조정 ○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대상 건설현장은 기술지도대상에서 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3대 취약시기 일제점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점검시기 및 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빙기(2월) : 지반붕괴 및 추락재해 예방시설 - 장마철(6월) : 침수·붕괴 및 감전재해 예방시설 - 동절기(11월) : 동파 및 화재폭발 재해예방시설 ○ 점검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점검반은 근로감독관, 안전공단, 기술사 등으로 구성하고, 빌주처 공사감독관(감리자)도 참여도록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구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노동부, 공단전문가, 대학 교수, 기술사 등 전문가 10인으로 구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사대상 : 근로자 3명 이상 사망사고,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고 등 ○ 운영방법 : 5인 1조 2개반으로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「안전 Patrol」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설현장의 신속한 지도·점검 및 중대사고 조사에 활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, 중대재해조사, 대형사고 우려현장 점검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지하철·고속전철 및 신공항 건설현장 집단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매반기별로 공사현장별 재해율 분석 ○ 재해율에 따라 양호, 보통, 불량으로 구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양호 : 참여업체 평균 재해율의 0.5배 이내 - 보통 : 참여업체 평균 재해율의 0.5배~2.0배 - 불량 : 참여업체 평균 재해율의 2.0배 이상 ※ 사망자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재해율로 평가

단위산업 및 주요내용	세 부 추 진 내 용
마. 재난위험 사업장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안전관리 불량사업장 집중지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양호 : 지도점검면제(자율관리) - 보통 : 안전공단 순회지도 실시 - 불량 : 벌주처에 통보 집중관리 요청, 근로감독관·안전공단·발주처 공사감독관 등 협동점검 실시 □ 재난위험 사업장 전담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상 : 500개소 내외 ○ 위험정도에 따라 등급분류 및 전담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양호 : 매 2월마다 안전점검 실시 - 불량 : 매분기마다 안전점검 실시 - 보통 : 자율안전점검 실시
바. 중·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도 체계구축 및 지도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중·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도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억원 미만 : 월 1회 지도 - 20억~100억원 : 분기 1회 지도 ○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지정 확대 및 인력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지도수준 향상 ○ 중·소건설현장의 효율적인 재해예방방안 강구 □ 대상 : 동시에 근로자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업체 □ 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문가와 협동조사를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발견시 관련기관에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요청
사. 대형사고 발생 건설업체 임찰참가제한 등 확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건설업체 재해율 조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사대상의 연차적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96 : 500대, '97 : 1,000대, '98 : 전 건설업체 ○ 조치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해율 양호업체는 전현장 지도감독 면제 - 재해율 불량업체는 지도감독 강화 및 입찰참가심사시 가·감점, 정부포상 금지 등 조치 □ 선진국수준의 건설안전기준정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설업 개방에 대비 국제수준에 맞는 건설안전기준정비
자. 건설업개방에 따른 건설안전 제도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중·소건설업체 안전관리강화 및 건설안전세미나 개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설안전세미나 개최(년 1회) □ 건설안전진단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진단대상 : 집중점검시 불량현장 및 중대재해발생현장 등 ○ 진단실시목표 : 매년 50개소 내외 ○ 첨단진단장비 도입으로 진단의 정밀도 및 신뢰도 제고(공단지역 본부 3개소당 1대 배정)
차. 작업현장불량 사업장 건설안전진단 실시	